

## 에디트론 협력회사 품질 요구서

| 순번 | 제/개정 일자    | Rev. | 작성부서   | 개정내용요약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|
|----|------------|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0  | 2019. 3. 4 | -    | 경영지원본부 | 신규 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 1  | 2019. 8. 9 | 1    | 경영지원본부 | 의심스러운 미승인품 요구사항 반영 및 문서번호 수정 반영 |    |
|    |            |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    |            |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    |            |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    |            |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    |            |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    |            |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    |            |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    |            |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    |            |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    |            |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    |            |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    |            |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    |            |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    |            |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
1. 적용범위

본 요구서는 (주)에디트론 (이하 "당사"라 한다)의 외부 공급업체(이하 "협력회사")의 품질 요구사항으로 적용하며 대상업체는 구매 및 외주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한다.

2. 목적

당사의 외부 공급업체(구매 및 외주 협력회사)의 품질 요구사항을 명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3. 일반사항

**(1) 본 요구서의 개정본은 (주)에디트론 홈페이지를 통해서 배포되며, 협력회사는 본 규격 (EDSQR, Editron supplier quality requirement)의 개정현황을 (주)에디트론 홈페이지 ([www.editron.co.kr](http://www.editron.co.kr))에서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최신본을 적용하여야 한다.**

(2) 품질시스템 승인

협력회사는 당사에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이전에 본 요구서에 명시된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품질시스템을 수립하여 당사의 협력회사 평가를 승인 받아야 한다.

(3) 추가 품질보증 요구조건

협력회사는 본 요구서에 명시된 품질시스템 이외에 다음의 품질보증 요건들을 만족하여야 한다.

- 1) 해당 제품 도면 및 규격에 명시된 품질보증/검사 및 시험 요건
- 2) 관련 정부 법규 및 계약 관련 문서에 언급된 품질보증 요건
- 3) 발주서에 명시된 품질요구사항

(4) 당사에서 제공한 문서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도 협력업체는 임의로 수정하거나 개정하여 제품 공급에 사용할 수 없다.

(5) 당사 및 당사의 고객 또는 대한민국의 감항당국, 대한민국과 상호안전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감항당국은 품질시스템 및 제품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계약과 관련된 협력회사 및 외주업체의 시설 및 기록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.

4. 품질보증 요구사항

(1) 품질 보증 요구사항

당사로부터 승인된 협력회사는 구매 및 협력업체 관리절차서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협력업체 평가에 대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.

(2) 부적합품 관리

- 1) 협력회사는 생산 공정 중 부적합이 발생되었을 경우 즉시 해당 부적합품에 대한 식별을 수행하고 정상 제품과 격리하여 별도의 부적합품 격리 구역에 보관하여야 한다.
- 2) 협력업체는 부적합품에 대해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을 포함한 부적합품 보고

서를 당사로 제출하여 부적합품의 처분을 의뢰하여야 한다.

**3) 당사의 승인을 득하지 않은 부품, 의심스러운 미승인 부품, 위조품, 재생품 그리고 부적합품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로 납품 되지 않도록 보증하여야 한다.**

(3) 식별 및 분리 보관

협력회사는 공정 간 및 납품 시 제품의 혼입을 예방할 수 있는 적절한 식별조치 및 분리 보관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.

(4) 검사 및 시험관리

- 1) 협력회사는 생산된 제품에 대하여 검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성적서로 작성 유지 및 당사로 제출하여야 한다.
- 2) 검사 성적서에서 요구되는 모든 특성치 및 결과치는 도면에서 요구되는 단위를 사용한다.
- 3) 협력회사의 품질검사는 전수검사를 원칙으로 한다. 단, 당사의 승인을 득하여 샘플링으로 전환할 수 있다.
- 4) 당사가 부품 제작 사양을 관리하지 않는 시판 표준품은 대리점 또는 구매처의 품질보증서(COC)로 검사성적서를 대체한다.

(5) 시정 및 예방조치

- 1) 당사에서 발행한 시정조치에 대하여 협력회사는 해당 시정조치 요구에 대한 조치 결과를 요구기한 내에(14일 이내) 회신하고 이행하여야 한다. 단, 당사의 회신 요구기한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 반드시 당사에 연기를 요청하여야 한다.
- 2) 당사는 협력회사가 별도의 연기 요청 또는 회신 없이 회신 요구기한을 경과한 경우, 회신 접수 및 조치이행 확인 전까지 제품 입고를 금지할 수 있다.

(6) 품질기록 보존 요구 사항

- 1) 당사에서 요구되는 모든 품질기록은 원본으로 제출하며 품질 기록 사본은 당사의 특별한 요구가 없을 시 최소 5년 이상 보존한다.
- 2) 보존의 방법은 복사본, 전산 등 협력회사의 규정에 따라 보존하여도 된다. 단 품질기록 보존기간 중 당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, 타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력회사는 10일 이내에 요구되는 품질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.

(7) 납품관리

- 1) 협력회사는 당사의 납기 일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일정을 준수하기 어려울 경우 납품일 7일 전에 당사 관리부서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.
- 2) 협력회사는 당사 납품 시 검사성적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품은 식별될 수 있도록 현품표를 부착하여 납품하여야 한다.
- 3) 협력회사는 위/변조 여부를 확인 및 식별하여 납품한다. (예: 원본 대조필 등)

- (8) 품질보증문서의 위, 변조 방지 의무
- 1) 협력회사는 당사로 공급하는 원자재, 반제품, 제품 및 품질 보증문서에 대해 고의 또는 묵인으로 인한 위/변조 문제 발생시 수반되는 모든 결과의 책임이 있다.  
(예: 공인기관 성적서, 시험성적서, 원자재 성적서 등)
  - 2) 협력회사는 품질보증문서 위/변조 문서가 당사로 제출되었을 경우 당사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, 그에 따른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.
- (9) 제조사 단종 또는 제품변경공지 부품의 신고
- 1) 공급중인 상용 전자부품에 대해 부품의 제조사 또는 유통되는 시장에서 단종 또는 제품변경공지(PCN: Product Change Notice) 문서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였을 경우 7일 이내에 구매 담당자에게 정보를 전달해 주어야 한다.
  - 2) 주기적으로 요청되는 단종 정보 확인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.
- (10) 협력회사 담당자 인식 사항
- 1) 공급품에 대한 제품안전과 적합성에 책임을 가져야 한다.
  - 2) 윤리적 행동의 중요성을 가져야 한다.